

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

(심사보고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9. 8. 6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'99. 8. 6(의안 제36호)
- 라. 상정일자 : 제37회사천시의회의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(99.8.12상정)

2. 제안이유

- .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정기·임시시장의 개설방법,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는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정기·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바꿈.
- 나.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 : 정기·임시시장
- 다. 정기·임시시장의 개설과 시설기준을 신설함(안 제3조) : 시장은 시장(市長)이 개설하며, 대지면적이 정기시장은 1,000㎡이상, 임시시장은 300㎡이상
- 라. 임시시장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 : 사용허가시 전액을 납부
- 마. 사용료 산정기준 “평(3.3㎡)”을 “제곱미터”로 변경하고, 임시시장 사용료를 신설함.(안 별표)

4.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

- 가.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
- 나. 정기시장의 경우는 완사시장이 적용을 받고, 임시시장의 경우는 시장현대화 사업등의 경우에 적용할 것으로
- 다. 새로 신설되는 임시시장 관련 사용료의 산정은 타 시,군 및 정기시장과의 균형을 맞추어 합리적으로 책정하였다고

판단되므로

라.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결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6. 토론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본회의 부의하기로 함)